



생명보험의 이해 10: 단체보험의 세제

오병국 연구원

- 단체보험이란 회사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보험계약으로써 종업원 전원을 일괄해서 계약시키는 것이 대표적 특징임.
- 단체보험의 세제는 크게 퇴직연금 보험료와 단체보장성 보험료의 세무 조정과 비용 처리로 요약됨.
 - 퇴직연금 보험료의 손금 산입, 단체보장성 보험료의 손비 처리 등을 포함한 과세내용이 관련 세법에 명시¹⁾됨.
- (퇴직연금 보험료의 손금 산입 등) 확정급여(DB)형과 확정기여(DC)형의 퇴직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함.
 -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였음.
 - 이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되며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적립하는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.

〈표 1〉 퇴직연금 보험료에 대한 과세 현황

구분	확정급여(DB)형	확정기여(DC)형
회사	한도 내 손금인정	전액 손금인정
종업원	세제지원 없음	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

1)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, 제38조;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, 제45조 등.

■ (단체보장성 보험료의 손비 처리 등) 회사가 계약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 중에서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연 7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손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함.

- 일반적으로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간주하여 회사가 부담한 단체보장성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에 해당되어, 회사는 손금으로 인정받고 종업원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.
- 하지만 단체순수보장성보험²⁾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³⁾은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여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하는 경우에 회사는 손금(복리후생비)으로 인정받고, 종업원은 비과세됨.
 - 다만, 연 70만 원을 초과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경우 일반적인 단체보장성보험과 동일하게 처리함. **kiri**

〈표 2〉 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한 과세 현황

구분	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서 회사가 납입하는 연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	일반적인 단체보장성보험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
회사	전액 손금(종업원의 복리후생비) 인정	전액 손금(종업원의 급여) 인정
종업원	근로소득세 비과세	근로소득세 과세

주: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연 7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일반적인 단체보장성보험의 경우와 동일한 세법이 적용됨.

2)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.

3)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.